

# 레이크우드 시 주거용 수도서비스 중단에 관한 방침

발효일 March 14, 2023

## 목적

이 방침은 주거용 수도서비스 계정에 관련되고 2018년 9월 28일에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법안 998호 “수도 단수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립되었다(CA HSC § 116900 et seq). 이 방침이 시의 다른 규칙, 규정, 혹은 방침과 상충하는 경우, 이 방침으로 규정한다.

이 방침은 (855) 785-4021으로 전화로 요청하여 문서로 볼 수 있고, 시정부 웹사이트 <https://www.lakewoodcity.org/SB998> 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시법령 1632항에 나온 언어에 추가된 언어,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10퍼센트가 사용하는 언어로 출판되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이전의 조건

시는 소비자가 최소한 60일 이상 체납이 되거나 또는 납부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고지서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정을 체납으로 처리한다.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이십오(25)영업일 전까지 요금 체납과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고객의 기록상 주소로 미국우편으로 발송한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의 주소가 아니면, “입주자” 이름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다.

- (1) 고객의 이름과 주소

- (2) 체납금액
- (3) 거주용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의 납부일이나 납부 약정 체결일
- (4) 고지서 재고와 항소에 관한 청원 절차 설명
- (5) 주거용 서비스 체납요금의 상환납부 등 납부 연기, 별도납부일정을 고객이 요청하는 절차의 설명
- (6) 고객이 해당되면 경제적 보조에 대한 정보를 받는 절차
- (7) 고객이 납부약정이나 시에서 추가 정보를 받는 전화번호.

### 성실한 통지 요건

시는 서비스를 끊어버리는 날짜로부터 칠(7)일까지 이 방침의 복사본과 서비스 중단 통지서를 주거지에 사는 고객과/또는 입주자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건물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다.

### 수도요금의 항소나 항의 혹은 수수료 면제

고객은 (855)785-4021으로 전화하거나 시청에 찾아가서 항소신청서를 받아서 수도요금을 항소하거나 항의한다. 항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체납통지서에 나온 날짜까지 시에 제출해야한다. 항소가 대기 중이면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항소를 검토하고 판결한다. 고객은 경리부장의 판결을 칠(7)일까지 시부장이나 대리인에게 항소하고 항소에 대한 판결은 최종적이다. 항소 판결이 나면,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고객은 수도요금을 칠(7)일까지 납부하거나 납부약정을 맺는다.

### 상환납부 약정

상환납부 약정으로 고객이 중단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중단을 피하려면, 고객은 (855)-785-4021으로 전화하거나 시청에 찾아가서 항소신청서를 받아서 요금체납 통지서의 약정 마감일까지 상환납부 약정서를 받아야한다. 납부약정을 맺기 전에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에게 약정서를 제출하고 허가받는다.

#### 상환납부:

- (1) 중지하지 전에, 고객이 상환납부 약정을 맺고 중지를 피하려면 (855)-785-4021으로 전화하거나 시청에 찾아가야 한다.
- (2) 계정에 나온 고객만 납부약정을 맺는다.
- (3) 서비스가 중지되어도, 서비스를 복구하고 발생한 연체료나 체납 벌금을 납부할 | 않으려면 고객은 시에서 상환납부 약정을 맺어도 된다.
- (4) 상환납부 약정은 한번에 한개(1) 요금만 납부하기 위해 사용한다.
- (5) 고객은 동시에 여러개 납부약정을 맺으면 안된다.
- (6) 상환납부약정이 있는 동안, 고객은 앞으로 나오는 고지서에 대한 현재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이고 중지하는 이유가 된다.
- (7) 상환납부약정은 고지서 날짜로부터 최고 일(1)년까지 납부한다. 납부약정의 요금과 날짜는 경리부장이나 대리인이 정한다.
- (8) 중지일 전까지 상환납부 약정서의 첫번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가 중단되고 고객이 상환납부 약정을 맺으면, 서비스를 복구하기 전까지 첫번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계약 불이행:

만일 상환납부약정을 허가받은 고객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에서 수도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 (1) 납부약정으로 정한 날짜까지 납부한다.
- (2) 납부약정으로 정한 금액에 따라서 만기요금을 납부한다.
- (3) 현재 수도요금을 납부한다.

납부약정의 어떤 사항이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은 끝난다. 시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최소한 오(5)영업일까지 서비스 주소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최종 통지서를 게시한다. 최종통지서로 고객이 시에서 조사받거나 재고받을 권리가 없다. 또한, 중지를 피하려고 고객이 새로 납부약정을 맺을 권리가 없다. 중지를 피하려면 과거 요금과 현재 요금은 납부해야한다.

## 의료적 문제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만일 다음과 같은 의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의 조건에 전부 부합하면, 시는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 (1) 수도 중단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에 사는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는 복지제도법 14088항의 (b)관 (1)문단 (A)항으로 정의된 용어인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 (2) 고객이 정상청구주기에 주거용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증명한다. 만일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주정부 추가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같은 정부보조의 현재 수혜자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 고객은 시의 정상청구주기에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형편이 안된다고 간주된다.
- (3) 고객은 시와 상환 납부약정을 맺을 의사가 있다.

고객은 의료적 문제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신청서를 받기 위해 (855) 785-4021로 전화한다. 체납과 임박한 서비스 중단 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작성한 신청서를 시에 제출한다. 고객에게 서류를 접수받고, 시에서 칠(7)일까지 서류를 검토한다.

- (1) 시에서 정한 납부약정을 통보하고 별도약정에 참여하는 고객이 서명한 동의서를 요청한다.
- (2)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 또는
- (3) 고객에게 의료적이거나 경제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한다.

## 집주인-세입자 관계에 대한 서비스

만일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 노동수용소의 영구 주거건물의 주거용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공급하고, 주택, 건물, 공원의 건물주,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인 경우, 계정이 체납상태일 때 시는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최소한 십(10)일 전에 주거용 고객에게 통지서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개별적 계량기가 있는 주거용 세입자는 체납 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 입주자가 시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수도서비스를 청구받는다.

- (1) 고객은 새로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필수내용을 전부 작성한다.
- (2) 서명한 건물 임대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출한다.
- (3) 첫번째나 두번째 고지서에 25달러의 서비스 개통료가 추가된다.
- (4) 신청서의 신용에 따라서, 공공시설법 10009.6조에 따라서 시에서 추산한 평균 고지서의 2배로 보증금을 요구해도 된다.

서비스 중단을 피하려면, 서비스 중단 통지서로부터 십(10)일까지 이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체납된 계정의 요금을 면제받기 위해, 고객이 되는 입주자는 기록상 체납계정의 고객이 현재나 과거에 주거지의 집주인, 관리인, 에이전트라고 증명할 의무가 있게 된다. 증명은 임대계약서, 월세 영수증, 입주자가 건물을 임대한다고 나온 정부 서류, 혹은 시법령 1962 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나 국한하지 않는다.

## 서비스 복구

고객은 서비스가 중지되고 복구하려면 (855) 785-4021 에 전화하거나 시청에 찾아가야 한다.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퍼센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1) 계정에 나온 고객에게만 서비스가 재연결된다.
- (2) 서비스를 재연결하려면, 시의회가 채택한 시의 수수료일정에 따라 체납과/혹은 복구비용을 포함하고 만기된 요금전액을 고객은 납부해야 한다.
- (3) 영업시간 이후에 (저녁 4시 30분 이후에 한 서비스 요청) 주거용 서비스를 재연결하면, 부과된 재연결 수수료는 시의회가 채택한 시의 수수료 일정을 따른다.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퍼센트 이하라고 증명한 주거용 고객

- (1) 서비스 재연결 수수료는 정상영업시간이면 오십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게 된다.
- (2) 정상영업시간 이후에 주거용 서비스를 재연결하면, 재연결 비용은 백오십 달러(\$150)를 초과하지 않는다.
- (3) 재연결 비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지표의 연간 변동사항의 수정안을 따른다.

중단일로부터 십(10)영업일 이상 지난 후, 새로운 계정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재연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채택한 시의 요금표에 따라 새로운 계정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중단된 서비스에 대한 연간 보고

시는 납부 불능으로 주거용 서비스가 일년에 중단된 숫자를 웹사이트와 주정부 수도자원통제국에 보고하게 된다.

고객의 무허가 행동

이 수도서비스 방침의 중단은 미납으로 인한 특정한 주거지에 해당되며 고객의 무허가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연결의 종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구제책

시가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수도서비스 요금의 미납에 관해 법으로 정해진 다른 구제책이나 형평성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은 것을 찾는다. 부동산에 압류채권을 신청하여 체납요금을 담보로 설정, 법률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 혹은 미납액을 제3자 수금업체에 넘긴다. 만일 법적 소송에서 시에 유리하게 판결나면, 시는 변호사 비용과 누적된 이자 등 모든 비용과 지출에 대한 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